

연구전임교원임용규정

제 정	:	2007. 8. 20
개 정	:	2009. 10. 1
개 정	:	2013. 4. 1
개 정	:	2013. 6. 1
개 정	:	2013. 9. 1
개 정	:	2014. 9.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연구전임교원(이하‘연구교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연구교원 임용대상자는 연구업무에 종사하여 연구업적을 높일 수 있는 자로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할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용직위) 연구교원의 신규임용직위는 연구경력과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조교수, 연구부교수, 연구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임용 시 직위별 교육 및 연구경력과 연구실적 충족 점수 기준은 신입교원전형 및 임용 지침을 준용한다.

임용직위	교육 및 연구경력 최소기준	평가대상기간	연구실적 평가기준 점수
연구조교수	6년	최근 5년	500점 이상
연구부교수	10년	최근 7년	1,050점 이상
연구교수	15년	최근 9년	1,500점 이상

제4조(임용기간) 연구교원의 임용기간은 최초 신규임용시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2년으로 하며, 재임용 및 승진임용시에는 직위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직위	임용기간
연구조교수	6년 이내
연구부교수	5년 이내
연구교수	정년(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제로 하되 7년 이내)까지

제5조(임무) 연구교원은 해당직위별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매학기 개설과목중 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당 6시간 이내 또는 2과목 이내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단, 외부기금 교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제6조(임용절차) ① 연구교원은 근무할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연구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다음의 제반 서류를 임용 1개월 이전까지 갖추어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

- 2. 이력서
- 3. 학력 및 경력증명서
- 4. 연구실적물

③ 공개채용의 경우 임용절차는 신입교원전형 및 임용 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재임용)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연구교원은 다음의 연구실적심사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

재임용 직위	평가대상기간	연구실적 평가기준 점수
		학술저작/저명/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최소기준
연구조교수	최근 6년 이내	1,200점
연구부교수	최근 5년 이내	1,000점
연구교수	최근 7년 이내	1,400점

③ 삭제(2013.04.01.)

④ 신규임용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기간	연구실적 평가기준 점수
	학술저작/저명/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최소기준
최근 2년 이내	400점

제8조(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의 승진소요연수에 달한 자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승진 직위	현직 최소연수	교육 및 연구경력 최소기준
연구부교수	연구조교수로 6년	10년
연구교수	연구부교수로 5년	15년

②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승진 직위	평가대상기간	연구실적 평가기준 점수
		학술저작/저명/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최소기준
연구부교수	최근 6년 이내	1,500점
연구교수	최근 5년 이내	1,250점

제9조(연구실적 산정 기준) ①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명시된 연구업적평가 사항에 따른다. 다만, 이 대학교 주관의 연구프로젝트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실적물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② 연구교원이 교육을 담당한 경우에는 교육업적평가 항목 중 담당강의 및 수업평가 항목만 적용하여 평가한 후 해당 점수를 연구실적에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상계점수는 학기당 2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실적 점수 중 전체 최소기준 점수에만

적용한다.

제10조(보수) 연구교원의 급여는 교원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교외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연구교원의 급여는 지원기관의 연구비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세부사항) (삭제)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개정규정 제7조의 ②항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 및 제8조의 ②항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 점수는 평가기간 전체를 100%로 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 이후의 연구업적을 각각 기간별로 안분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